



한국정책방송원 기본운영규정

[시행 2026. 2. 1.] [한국정책방송원예규 제205호, 2026. 2. 1., 일부개정]

한국정책방송원(운영지원부), 044-204-8362

제1장 총 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「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률」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기타 한국정책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[개정 2007. 8. 30.]

제2조(소관업무) 한국정책방송원(이하 "방송원"라 한다)은 정부정책 관련 방송 프로그램 제작·송출, 온라인 콘텐츠 제작 및 소셜네트워크 서비스, 정부 영상자료 아카이브 구축·서비스, 정부·공공기관 및 단체의 영상물 제작에 대한 협력·지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. [개정 2004. 8. 14.] [개정 2007. 8. 30.] [개정 2017. 8. 7.] [개정 2018. 11. 5.]

제3조(적용범위) 방송원의 운영에 관하여 법령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 [개정 2007. 8. 30.]

제2장 조직 및 정원관리

제4조(원장) 원장은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 사무를 통할하고,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[개정 2013. 12. 12.] [개정 2015. 8. 12.]

제5조(하부조직) ① 방송원에 방송기획관, 기획편성부, 온라인콘텐츠부, 방송보도부, 방송제작부, 방송영상부, 방송기술부, 운영지원부를 둔다. [개정 2004. 8. 14.] [개정 2005. 8. 2.] [개정 2007. 8. 30.] [개정 2007. 9. 17.] [개정 2008. 3. 19.] [개정 2008. 8. 25.] [개정 2009. 11. 16.] [개정 2011. 12. 19.] [개정 2013. 7. 15.] [개정 2017. 8. 7.] [개정 2018. 11. 5.] [개정 2022. 12. 1.]

② 방송기획관은 전문임기제 가급으로, 기획편성부장·온라인콘텐츠부장·방송보도부장·방송제작부장·방송영상부장은 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, 방송기술부장은 부이사관·서기관 또는 과학기술서기관으로, 운영지원부장은 서기관으로 보한다. [개정 2005. 8. 2.] [개정 2007. 8. 30.] [개정 2007. 9. 17.] [개정 2007. 8. 30.] [개정 2008. 3. 19.] [개정 2008. 8. 25.] [개정 2009. 11. 16.] [개정 2010. 7. 1.] [개정 2011. 12. 19.] [개정 2013. 7. 15.] [개정 2013. 12. 12.] [개정 2014. 10. 15.] [개정 2015. 8. 12.] [개정 2017. 8. 7.] [개정 2018. 11. 5.] [개정 2019. 12. 31.] [개정 2021. 02. 08.] [개정 2022. 12. 1.] [개정 2023. 08. 30.]

③ 각 부의 업무분장은 별표 1과 같다. [개정 2002. 6. 26.] [개정 2004. 8. 14.] [개정 2005. 8. 2.] [개정 2007. 8. 30.] [개정 2008. 3. 19.] [개정 2008. 8. 25.] [개정 2009. 11. 16.] [개정 2010. 7. 1.] [개정 2011. 12. 19.] [개정 2012.

9. 24.] [개정 2013. 7. 15.] [개정 2014. 10. 1.] [개정 2017. 8. 7.] [개정 2018. 11. 5.]

제5조의2(팀장제) 각 부장 아래 하부기구로 팀장을 둔다. [신설 2019. 7. 1.]

- ① 기획편성부에 기획총괄팀장·편성전략팀장·대외협력팀장을 둔다.
- ② 온라인콘텐츠부에 기획제작팀장·플랫폼소통팀장·행정팀장을 둔다.
- ③ 방송보도부에 편집팀장·취재팀장을 둔다.
- ④ 방송제작부에 디지털중계1팀장·디지털중계2팀장·제작팀장을 둔다.[개정 2026. 2. 1]
- ⑤ 방송영상부에 촬영팀장·아카이브팀장·영상행정팀장을 둔다.
- ⑥ 방송기술부에 기술운용팀장·기술관리팀장·기술행정팀장을 둔다.
- ⑦ 운영지원부에 총무팀장·재무팀장을 둔다.
- ⑧ 각 팀장은 보좌서기관, 행정사무관·공업사무관, 방송무대사무관으로 보하되, 부득이한 경우 원장의 명에 따라 임기제공무원·방송무대주사로 보할 수 있다. [신설 2019. 7. 1.]

제6조(업무의 위임전결) 방송원의 업무에 관한 위임전결 사항은 한국정책방송원 위임전결규정에 의한다. [개정 2004. 3. 31.] [개정 2007. 8. 30.]

제7조(공무원의 종류와 정원) ① 방송원에 두는 공무원의 종류와 직급별 기준정원은 별표2와 같다. [개정 2002. 10. 31.] [개정 2004. 3. 31.] [개정 2004. 8. 14.][개정 2005. 8. 02.] [개정 2007. 8. 30.] [개정 2008. 3. 19.] [개정 2009. 11. 16.] [개정 2010. 7. 1.] [개정 2011. 1. 1.] [개정 2011. 9. 16.] [개정 2012. 08. 07.] [개정 2013. 1. 24.] [개정 2013. 7. 19.] [개정 2013. 12. 12.] [개정 2014. 2. 17.][개정 2014. 5. 20.] [개정 2014. 12. 11.] [개정 2015. 1. 7.] [개정 2015. 5. 26.] [개정 2017. 2. 28.][개정 2018. 3. 30.] [개정 2019. 3. 4.] [개정 2019. 4. 16.] [개정 2019. 12. 31.] [개정 2020. 2. 25.]

② 방송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방송 업무를 담당하는 80명(5급 9명, 6급 31명, 7급 27명, 8급 12명, 9급 1명)은 「국가공무원법」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 [개정 2013. 12. 12.] [개정 2014. 5. 20.] [개정 2015. 1. 7.] [개정 2015. 5. 26.] [개정 2017. 2. 28.] [개정 2018. 3. 30.] [개정 2019. 3. 4.][개정 2019. 4. 16.][개정 2020. 2. 25.][개정 2023. 12. 29.][개정 2024. 3. 26.] [개정 2025. 12. 30.]

③ 삭제 [2013. 12. 12.]

③ 2항의 방송 업무 중 주요 국정과제 특집 제작 담당 8급 2명, 디지털 아카이브 구축 담당 7급 1명, 온라인 생방송 운영 업무 담당 7급 1명은 제26조의5제1항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한다. [신설 2025. 12. 30.]

④ 대국민 저작물 전면 개방 관련 중계 및 기록 영상물 확보 업무추진을 위하여 「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」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7년 12월 31일까지 별표3에 따른 한시정원을 한국정책방송원에 둔다. [신설 2025. 12. 30.]

제3장 인 사 관 리

- 제8조(임용권의 범위)** ① 원장은 3급 공무원에 대한 전보권 및 4급 이하 공무원 및 임기제 공무원에 대한 임용권을 갖는다. 다만 5급 이상 공무원 임용에 관하여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. [개정 2008. 3. 19.] [개정 2013. 12. 12.]
- ② 원장은 방송운영에 필요한 관련전문가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임기제공무원으로 임용할 수 있다. [개정 2004. 3. 31.] [개정 2008. 3. 19.] [개정 2013. 12. 12.] [개정 2015. 8. 12.]
- 제9조(신규채용)** ①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경쟁 채용시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한다. 다만, 해당 업무와 관련된 전문경력 또는 자격증 소지자를 일반직 공무원으로 채용하는 경우에는 경력경쟁채용시험을 통하여 채용할 수 있다. [개정 2002. 6. 26.] [개정 2004. 8. 14.] [개정 2007. 8. 30.] [개정 2013. 12. 12.]
- ② 제1항 단서조항의 일반직 공무원의 채용에 관한 시험방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 관련 법령에 따른다. [개정 2007. 8. 30.] [개정 2013. 12. 12.]
- ③ 임기제 공무원의 신규채용은 공개 모집하여 인사 관련 법령에 따라 채용한다. [개정 2013. 12. 12.]
- 제10조(시험실시의 원칙)** 소속 공무원의 임용을 위한 시험은 신규 채용 및 전직시험으로 구분하여 직급별·직렬별로 실시한다.
- 제11조(시험방법)** 시험은 필기시험, 실기시험, 면접시험 및 신체검사의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,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의 단계를 일부 생략하거나 병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. [개정 2007. 8. 30.]
- 제12조(시험과목 등)** 신규채용 및 전직시험의 시험과목·배점, 신규채용 응시자의 자격요건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인사 관련 법령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. [개정 2013. 12. 12.]
- 제13조(채용후보자 명부작성)** ① 신규채용시험 합격자에 대하여는 최종 시험 성적순에 의하여 채용후보자 명부를 작성하되, 전공분야와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.
- ② 채용후보자 명부의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.
- 제14조(인사위원회)** ① 소속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에 대한 심의는 한국정책방송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.
- ② 징계와 관련하여 위원회 구성 등 사항은 국가공무원 징계관련 법령에 따른다. [신설 2013. 10. 7.] [개정 2004. 3. 31.] [개정 2007. 8. 30.] [개정 2016. 12. 27.]
- 제15조(보직관리의 원칙)** 원장은 휴직, 직위해제 또는 정직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급과 직렬에 상응하는 직위를 부여하여야 한다.
- 제16조(전직)** 원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직시험을 거치지 아니하고 소속 공무원을 전직시킬 수 있다.
1. 전직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당해 부문의 국가에서 인정하는 자격증을 가진 경우
 2. 전직 예정 직급에 상당하는 공무원 근무경력이 있는 경우

제17조(승진방법) ① 일반직 공무원의 승진임용은 공무원 임용령을 준용하여 원장이 임용한다. 다만 인사교류가 필요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과 협의하여 승진 임용한다. [개정 2008. 3. 19.] [개정 2013. 12. 12.]
 ② 제1항의 경우 반드시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.

제18조(근무성적평정) 근무성적 평정은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해서는 성과계약에 의한 목표달성도 등을 평가하고 5급 이하 공무원은 근무실적, 직무수행능력 및 직무수행 태도 등을 구분하여 평가한다. [개정 2006. 3. 10.] [개정 2013. 12. 12.]

제19조(평가시기) ① 4급 이상 공무원에 대한 성과계약 평가는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. [개정 2006. 3. 10.] [개정 2007. 8. 30.]
 ② 5급 이하 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 평가는 정기평가 및 수시평가로, 경력평정은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으로 구분하여 실시한다. [개정 2007. 8. 30.] [개정 2013. 12. 12.]
 ③ 제2항의 정기평가 및 정기평정은 6월 말일과 12월 말일을 기준으로 하여 실시하고, 수시평가 및 수시평정은 조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 실시한다.[개정 2007. 8. 30.]

제20조(근무성적평가) ①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하여는 근무성적평가를 실시한다. [개정 2007. 8. 30.] [개정 2013. 12. 12.]
 ② 근무실적 평가는 당해 공무원의 근무실적, 직무수행능력을 평가하여야 하며, 그 결과는 승진임용 및 포상 등 각종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. [개정 2007. 8. 30.]
 ③ 5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의 직급별 근무성적 평가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의 관련규정에 따라 평가한다. [개정 2007. 8. 30.] [개정 2008. 3. 19.] [개정 2013. 12. 12.]

제21조(근무성적평가의 예외)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성적 평가 대상기간 중 휴직, 직위해제, 기타의 사유로 실제 근무기간이 1월 미만인 경우와 신규채용, 승진 임용된 후 2월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근무성적을 평가하지 아니한다. [개정 2007. 8. 30.] [개정 2013. 12. 12.]

제22조(임기제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) ① 임기제 공무원에 대하여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및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지침에 따라 근무성적을 평가한다. [개정 2013. 12. 12.] [개정 2015. 3. 31.]
 ② 임기제 공무원의 근무성적평가 결과는 성과연봉, 재계약 및 기타 인사고과 등에 활용할 수 있다. [개정 2007. 8. 30.] [개정 2013. 12. 12.]

제23조(근무성적평정표) 근무실적평가는 공무원 성과평가 등 운영지침에 의한 서식으로 실시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 원장이 그 서식을 따로 정할 수 있다. [개정 2007. 8. 30.]

제24조(업무목표 설정 및 목표달성도 평가) ① 원장은 매년 2월말까지 4급 이상의 평정대상 공무원에 대하여 연간 수행할 업무목표를 설정하여야 한다. [개정 2013. 12. 12.]
 ② 평정자 및 확인자는 평정대상기간 종료 후 업무목표별로 달성도를 평가하고 해당목표의 중요도,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목표 달성도의 평정점을 결정하여야 한다.

제25조(성과상여금의 지급) ① 근무성적 기타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부서 및 직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성과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.

② 제1항의 부서 및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상여금의 총액은 원장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고 그 총액의 범위 내에서 개인별, 부서별로 성과 상여금액을 차등 지급할 수 있다. [개정 2008. 3. 19.]

제26조(인사법령 등의 적용) 방송원 공무원의 인사관리에 관하여 기본운영규정과 한국정책방송원 인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규정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국가공무원법」과 기타 공무원인사 관계법령 및 인사혁신처의 인사 관련 예규를 준용한다. [개정 2005. 8. 2.] [개정 2008. 3. 19.] [개정 2013. 12. 12.] [개정 2015. 3. 31.] [개정 2016. 12. 27.]

제4장 복무관리

제27조(복무원칙) 방송원 소속 공무원의 복무관리는 국가공무원 복무관련 법령에 의한다.

제28조(근무시간 등의 변경) 원장은 프로그램 방송 등 방송원 운영상 필요할 경우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근무시간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9조의 공무원의 근무시간과 다르게 변경, 운영할 수 있다. [개정 2005. 8. 2.] [개정 2015. 3. 31.]

제29조(초과근무수당 등) 시간외 근무 및 휴일 근무를 한 직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초과 근무한 실제 시간수와 일수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제5장 자체규정의 제정 등

제30조(예규의 제정) 원장은 방송원의 기본 업무에 대한 절차, 방법, 범위기타 업무처리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기 위해 내부규정(이하"예규"라 한다)을 제정할 수 있다. [개정 2004. 8. 14.]

제6장 소관업무의 민간위탁

제31조 ~ 제32조 [삭제 2004. 8. 14.]

제7장 예산 및 회계

제33조 [삭제 2006.3.10.]

제34조(예산회계관련 법규의 적용) ① 예산회계 관련 업무는 책임운영기관의 설치·운영에 관한 법령의 규정 이외에 각 분야별로 다음의 관련 규정을 적용한다.

1. 예산편성, 심의, 집행 등 예산관련 사무는 국가재정법과 당해연도 예산편성 및 집행지침에 의한다. [개정 2007. 8. 30.]
 2. 계약 사무는 "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"과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한다.
 3. 수입 사무는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. [개정 2006. 3. 10.] [개정 2007. 8. 30.]
 4. 물품관리 및 국유재산관리 사무는 물품관리법과 국유재산관리법에 의한다.
- ② 세입·세출 등 회계운용은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의한다. [개정 2006. 3. 10.] [개정 2007. 8. 30.]

부칙 <제205호,2026.2.1.>

이 기본운영규정은 2026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.